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1737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태

변론 종결2022. 3. 17.

판결 선고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14,875원 및 그 중 34,445,010원에 대하여 2021.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20. 10. 21. 피고에게 논산시 D 소재 주식회사 E 논산공장 신축전기공사를 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20. 10. 26.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4조 대금지불의 방법

- 1) 계약금 :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인 2,2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2) 기성금 : 공사진행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한다.
- 3) 잔금 : 공사 준공 후 계약금액의 10%인 2,2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 계약이행

본 공사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급자(피고, 이하 같다)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420만 원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공급받는 자(C, 이하 같다)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은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선금금 지급보증

계약금 수령 시 공급자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선금금이행보증증권을 공급받는 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 해약조건

공급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공급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1) 공급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종사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받는 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시
- 2) 공급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조잡하여 본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거나 공급자가 태만하여 공사완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3) 기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 4) 해약 시 계약금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20. 10. 27. C로부터 계약금 2,42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0. 10. 2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가입금액을 2,420만 원, 보험기간을 2020. 10. 22.부터 2021. 2. 28.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선급금보증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보통약관

제1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한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하 "보험회사"는 "회사",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주계약에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액 = 선금급 지급액 - (선금급 지급액 X 선금급 주계약의 이행부분 상당금액주계약금액 - 미정산기성금액)

②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 호의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각 호는 생략)

③ 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20. 10. 2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가입금액을 2,420만 원, 보험기간을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로 하는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계약보증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보통약관

제1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 호의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각 호는 생략)

③ 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주계약의 해지)

-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20조(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라. 피고는 2021. 2. 15. C에게 공사비 초과 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1. 2. 10.까지의 경비만 처리하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C는 2021. 2. 10.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2021. 4. 5. 원고에게 앞서 본 선급금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에 기한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C에게 2021. 4. 23. 선급금보증보험금으로 10,245,010원¹⁾, 계약보증보험금으로 2,4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선급금보증보험금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4.부터 2021. 5. 23.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50,523원이고, 위 계약보증보험금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4.부터 2021. 5. 23.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19,342원이며, 2021. 5. 24. 이후의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9%이다.

2. 계약보증보험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도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인 C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시 C에 귀속시키기로 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인 2,4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 2,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C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피고와 C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툼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계약보증보험약관의 내용상 원고의 C에 대한 계약보증보험금채무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라 할 것인데, 갑 11, 13호증, 을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금난을 겪으면서 피고의 자금 내지 피고 대표이사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C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2. 15. C에게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는 협의사항으로 공사대금 미수금 1억 원은 피고가 포기하고, 2021. 1. 이후의 인건비는 C에서 부담하며,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시부터 2021. 2. 10.까지 발생한 경비는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C도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함으로써 위 협의사항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교부받은 후 원고로부터 계약보증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도 피고에게 별도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 보조참가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부인하며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C가 약정해지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해지된 것이 아니라 피고와 C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C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 합의해지 당시 피고와 C 사이에 수수된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의 협의사항에서 언급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수령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포기하고 착공 시부터 2021. 2. 10.까지 발생한 경비를 부담하며, C는 2021. 1. 이후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관계도 정리하였을 뿐,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은 유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에게 보험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를 구상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급금보증보험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도포기함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보험자인 C의 청구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산한 선급금 상당액인 10,245,0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 10,245,0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선급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C가 반환받지 못한 선급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선급금보증보험금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가 발생하고 피고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선 피고의 C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C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당시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기재된 협의내용과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기수령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포기하고 착공 시부터 2021. 2. 10.까지 발생한 경비를 부담하며, C는 2021. 1. 이후의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수령한 선급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앞서 본 협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급금을 포함한 기수령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피고가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정산합의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C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가 피고에게 선급금반환을 청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청구를 받고서도 불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급금보증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산한 선급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을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하성원

1) 선급금보증보험금 10,245,010원 = [선급금 지급액 2,420만 원 - (선급금 지급액 2,420만 원 × 주계약의 이행부분 상당금액 120,730,489원/주계약금액 2억 4,200만 원) - 미지급기성액

857,440원] ÷ 110%